

(공고-국-제2호)

# 2026년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공고 대상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内  
10개 연구개발과제 내외

2026. 1. 7.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목 차

I. 2026년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시행 공고	
1. 공고 대상	2
2. 일반 및 유의사항	3
II.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9
2. 신청서류 접수일정 및 방법	12
3.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13
4. 기타	16
III.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18
2. 평가항목 및 배점	19
3. 평가점수 산정방법	21
IV.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기준	24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25
3. 항목별 세부 계상기준	25
4. 청년인력 신규채용 세부사항	30
5.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31
6. 기술료 납부	31
7. 기타	32
V. 신청 관련 Q&A	33
VI. 과제제안요구서(RFP)	38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50

---

## I . 2026년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시행 공고

---

# 1. 공고 대상

## 가.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개요

- 총 연구개발기간 : '26.04~'29.12(3단계까지 수행시)
    - '26년 연구개발기간(1단계, 10개 과제 내외) : '26.04~'26.12
    - '27년 연구개발기간(2단계, 6개 과제 내외) : '27.01~'27.12
    - '28년 연구개발기간(2단계, 6개 과제 내외) : '28.01~'28.12
    - '29년 연구개발기간(3단계, 5개 과제 내외) : '29.01~'29.12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11,900백만원(과제당 1,940백만원 이내, 3단계까지 수행시)
    - '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1,400백만원(과제당 140백만원 이내, 10개 내외)
    - '27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3,600백만원(과제당 600백만원 이내, 6개 내외)
    - '28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5,400백만원(과제당 900백만원 이내, 6개 내외)
    - '29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1,500백만원(과제당 300백만원 이내, 5개 내외)
-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이며, 과제규모,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은 정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나. 공고 대상 연구개발과제(10개 내외)

연번	연구개발과제명	총 연구개발기간 ('26년 연구개발기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단계까지 수행 기준)	'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개 과제 기준)
1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	'26.04~'29.12, 45개월 ('26.04~'26.12, 9개월)	11,900백만원 이내 (과제별 1,940백만원 이내)	1,400백만원 이내 (과제별 140백만원 이내)

※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2. 일반 및 유의사항

### 가. 일반사항

- 연구개발과제는 필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편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 개발기술의 성과확산을 위해 수요처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 권장(직접 실증 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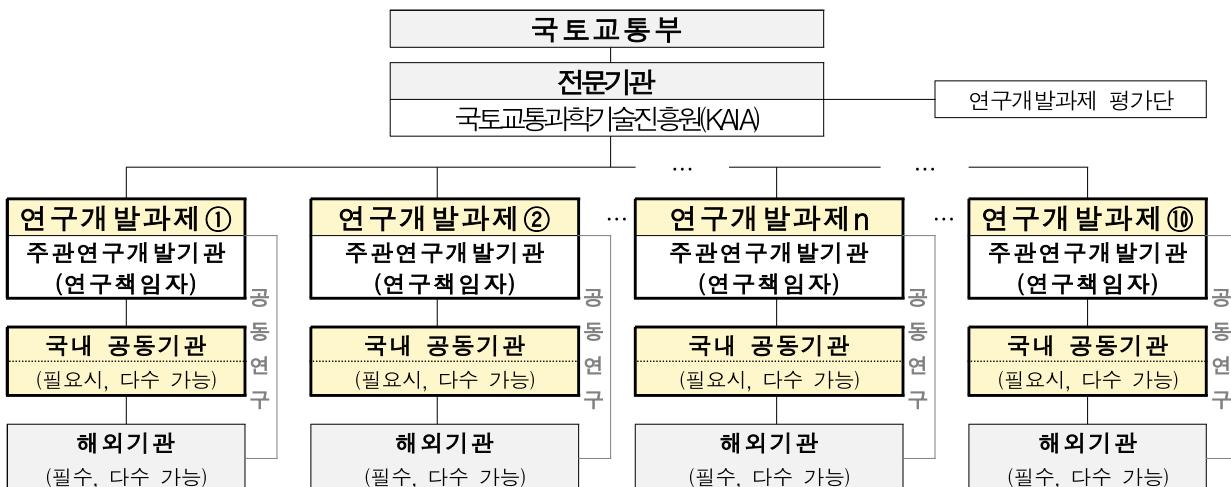
#### 용어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비 지원, 현지 실증 지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등을 위해 참여하는 기관
  - ※ 해외기관은 해외협력기관, 해외실증지원기관, 해외수요기관 중 하나로 참여 가능하며, 이중 해외협력 기관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해외기관 유형 구분	설명 및 협력 예시
해외협력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설명)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 ·(협력 예시) 현지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을 현지화하고 사전 실험, 인·감증, 기술 개선사항 도출 등 협력
해외실증지원기관 (정부예산 지원 불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설명) 부지 제공, 승인 등 현지 실증과정을 지원하는 해외기관 ·(협력 예시) 현지 정부·지자체 등의 지원으로 실증 대상지를 제공받고 실증시 필요한 사전 허가 취득, 실증후 기술도입(구매) 협의 등 협력
해외수요기관 (정부예산 지원 불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설명) 기술을 도입할 해외 발주처 혹은 원도급사 ·(협력 예시) 현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실증후 기술도입(구매) 협의 등 협력

-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자는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봄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연구개발기관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 명확성 등에 따라 향후 협약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해외협력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연구개발기관 편성을 지양(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로서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위탁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 수행 가능)

- 연구개발과제의 주요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공고 안내서의 “VI.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작성
-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세부 연구 개발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 명확한 사유와 근거 제시 필요
  - ※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및 과제 특성을 반영한 고유 성과목표·지표를 설정하되 연구 개발성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질적 지표 50% 이상 반영

- |  |
|--|
| · 예시1) 논문 성과 관련 : SCIE 논문 ○건 등록 → 계재한 SCIE 논문의 피인용도          |
| · 예시2) 특허 성과 관련 : 특허 ○건 등록 → ○○ 분야 표준 특허 창출, 등록 특허의 SMART 점수 |
| · 예시3) 사업화 성과 관련 : 사업화 ○건 달성 → 사업화에 의한 매출 및 매출기여도            |

- 선정평가시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로 발표(PPT 등 별도자료 사용 불가)**
- **기수행과제(종료과제, 중단과제)** 및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 관련 연구 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활용방안을 연구개발계획에 포함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http://www.kaia.re.kr))의 ‘지식’-‘성과 도서관’-‘과제·보고서’ 및 과학기술 지식인프라 통합서비스(사이언스온, ScienceON) 참고
- 제안하는 연구개발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 연구개발 수행 중 중복성이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개발과제명 작성시 [참고1] 연구개발과제명 작성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
  - ※ 과제명 변경 제안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연구개발과제명 란에 원제목 병기

< 예시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中

연구개발과제명	000기술 해외 확산·사업화를 위한 000000 현지화 기술 개발 및 실증 (원제목 :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
---------	---

- 본 공고 관련 일반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국가연구 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을 따름
  -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http://www.kaia.re.kr))의 ‘사업’-‘국토교통R&D’-‘규정·서식·매뉴얼’ 참고
- 상기 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 나. 유의사항

- 본 연구개발과제는 총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관문형 단계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1단계(9개월, 10개 과제 내외) : '26년 4월 ~ '26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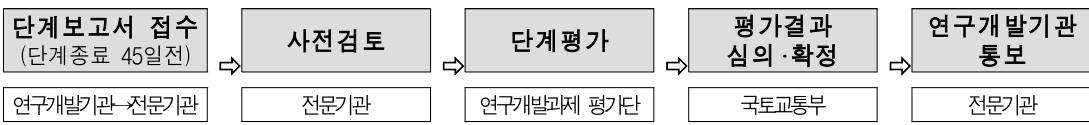
- 2단계(2년, 6개 과제 내외) : '27년 1월 ~ '28년 12월

※ (2단계 연차별 예산) 1차년도('27년) 600백만원 이내, 2차년도('28년) 900백만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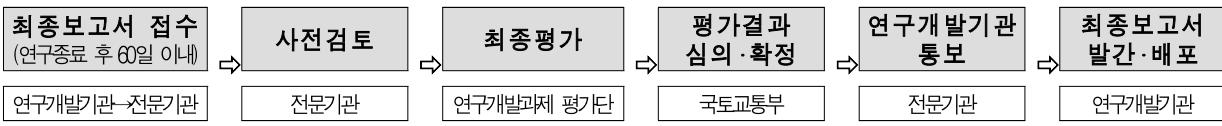
- 3단계(1년, 5개 과제 내외) : '29년 1월 ~ '29년 12월

※ <참고> 연구개발과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절차

< 단계평가 절차(안) >



< 최종평가 절차(안) >



-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혁신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외의 비용을 부담(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제4호)

※ 영리기관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을 포함, 이하 공기업) 및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이 아닌 기업, 이하 대기업)

- 영리기관은 혁신법 시행령 별표1(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에 부합하도록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필요  
※ 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 · 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부담 제외(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 운영규정 별표3)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단, 별지7호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 사업자등록증 상 하기 업태(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선정평가 등을 통해 결정)

업태(종목)	업태(종목)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919. 기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22. 환경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자(한국연구산업협회 증명서 발급)
-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로서 해당 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연구원
-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
  -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과제 추진시 역할이 명확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인력을 신규로 채용해야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채용 계획을 반드시 제시 필요(운영규정 제29조제6항, 관리지침 제22조제5항 · 제6항)
 

※ 본 공고 안내서의 “IV.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4. 청년인력 신규채용 세부사항” 참고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모든 중소 기업은 연차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협약시 및 연차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전에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필요(관리지침 제11조제4항, 제21조제4항 · 제7항)
  - ※ 본 공고 안내서의 “IV.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5.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참고
- 보험기간은 각 연차시작일~해당 단계종료일+9개월이며, 이행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간접비로 계상 가능
- 단,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이자 보상배수 1.0배 이상 모두 만족하는 기업은 면제(선정평가 이후 협약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연구개발성과의 해외 실용화 및 사업화 추진계획 필히 제시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사업화로 예상되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및 산출근거 제시
  - 파일럿 테스트, 테스트베드 등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성 검증 및 사업화 추진계획 제시
-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전략 및 계획)에 상세히 제시
-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관리는 혁신법 제16조에 따르며 컨소시엄 구성시 사전에 협의하여 효과적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사업화 방안 등)을 제시
- 우수특허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전략 수립계획, 연구종료 연차의 최종성과분석 계획 등을 연구계획에 포함하여 제시할 것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 기술료를 징수해야 함
  - ※ 본 공고 안내서의 “IV.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6. 기술료 납부” 참고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혁신법 및 혁신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납부
-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등

## **II.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 작성**

#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가.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혁신법 제2조제3호,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상기 법적 요건 외에 아래 사항 만족 필수
  - 사업공고일(26.1.7) 이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회사로, 보유한 기술에 대해 해외 실증 및 사업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 과제 신청 기업에서 해당 품목 관련 기술이전 받은 경우(공공기술 이전 제외)에는 신청접수 마감일(26.2.9)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만 해당(체결예정 포함)

구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기술이전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술이전 품목명, 내용 및 범위, 계약기간, 기술이전 납기일 또는 예정일, 각 기관의 장 날인 등(기술이전 해당기관 간 협의된 양식 사용(자유양식))</li></ul>
기술이전거래 예정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술이전 거래 예정 기술에 대해 해당기술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 기술이전 거래 예정확인서(기관별 직인 포함)<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본계약 체결기한 : 동 사업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시 기술이전계약서 필수 제출 (별도 사유 없이 미제출시 과제선정 취소)</li></ul></li></ul>

## 나.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참여제한

- 신청 마감일 기준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또는 기관
- 신청 마감일 기준 관리지침 별표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조건)에 해당할 경우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창업 3년 미만 기업 제외)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공기업, 지방공기업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 연구자가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 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로 제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 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21.01.01 시행)의 연구 책임자의 최대 동시수행 가능 과제수(3개)를 감안하여 신청
    -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 본문2 > 내에 있는 1. 연구개발기관 현황,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란에 신청 중(또는 신청 예정)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현황을 상세히 작성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않음
    -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혁신법 시행령 제5조 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혁신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혁신법 제2조제3호의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事實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

## 다.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구성시 유의사항

-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사업」 内 과제를 수행중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본 연구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할 수 없음
  - 단, '23년 공고 1단계 수행 이후 2단계 미수행 연구개발기관은 새로운 주제의 연구개발내용으로 본 사업의 '26년 신규 공고에 지원 가능
- '26년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규 공모 사업 중 자유공모 사업<sup>\*</sup>은 연구개발기관이 동일 기술로 1개 연구개발과제만 수행 가능
  - \* <sup>1)</sup>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sup>2)</sup>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 개발사업, <sup>3)</sup>협력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선도기술탐색형, 한-스페인 양자협력형)
- 동일기관(주관·공동)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 내에서는 중복 참여가 불가 하나, 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는 가능
- 최종 과제제안요구서(RFP)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기획자는 주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 불가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컨소시엄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 참여 불가
  - ※ 경쟁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전문가로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
  - 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동일학과, 국공립연구기관, 「정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 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은 동일부서에 한해 경쟁 컨소 시엄에 동시 참여를 제한함
-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개발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

## 2. 신청서류 접수일정 및 방법

### 가. 접수일정

공고기간	인터넷(전산) 입력 및 신청서류 접수
'26.01.07(수) ~ '26.02.09(월) 18:00까지 (34일)	'26.01.16(금) ~ '26.02.09(월) 18:00까지 (25일)

### 나. 온라인 사업설명회 일시/장소 : '26.1.20(화) 16:00~17:00(예정) / Zoom

- ※ '26.01.18(일)까지 아래 링크에서 참석 신청한 신청자에 한하여 화상회의 정보(회의 ID, 암호 등) 제공
- ※ 참석 신청 링크 : <https://naver.me/xXwOzM8H>

### 다. 인터넷(전산) 입력 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에 접속하여 사업공고 메뉴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선택하여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참고6] IRIS 전산접수 매뉴얼 참고
- 인터넷 입력 마감일 18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되므로, 종료 전에 입력 뿐 아니라 '최종확인' 및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  
※ 기한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시 신청서류 접수 불인정
- 인터넷 입력 시, 신청서류 업로드, 연구자 등록, 기관 등록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PC 권장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서류 접수 요망

### 라.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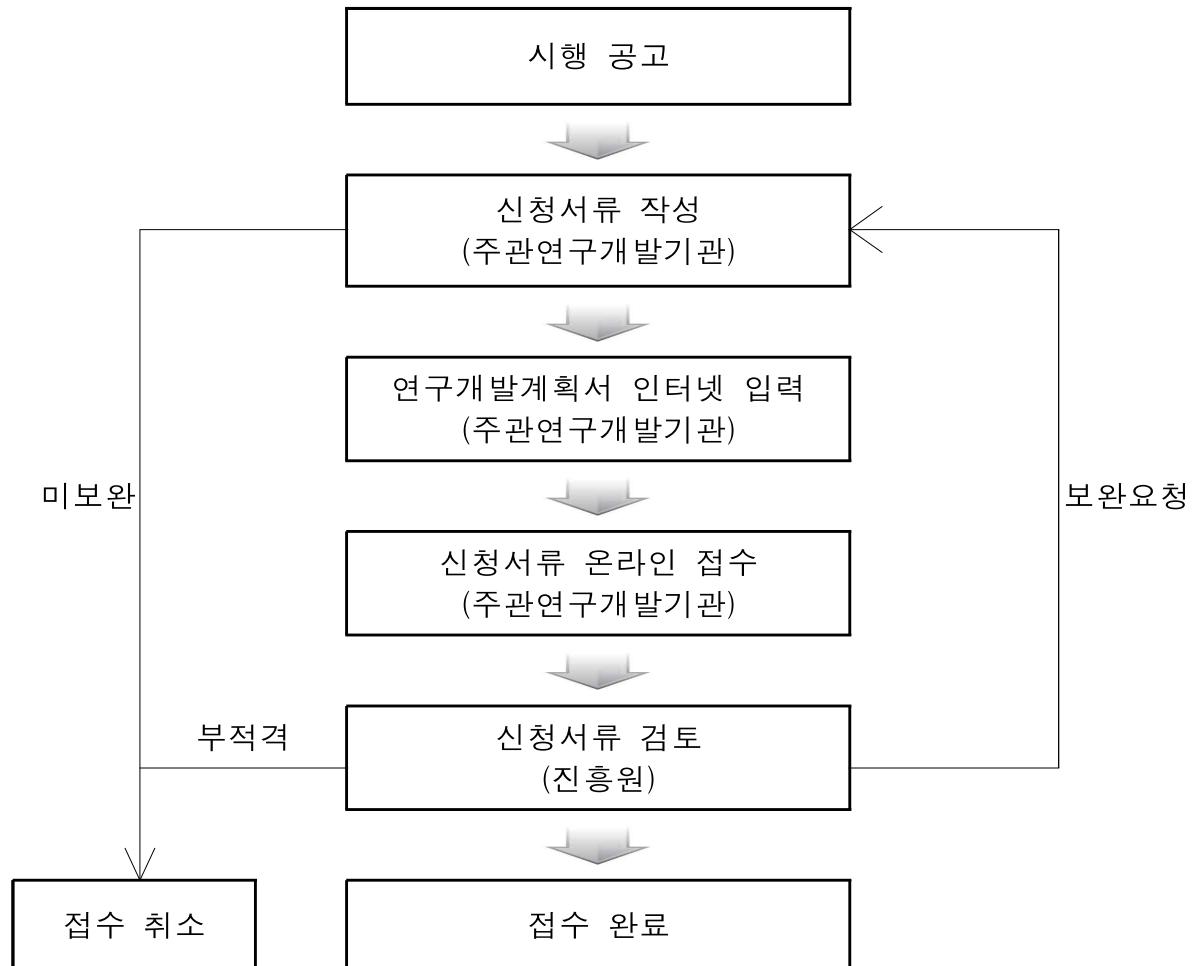
- 공고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 글로벌성장협력실  
최유 선임연구원(031-389-6540, [global@kaia.re.kr](mailto:global@kaia.re.kr))  
※ 문의 전 공고안내서와 Q&A 확인 후 이메일 문의 요망(공고기간 유선문의 폭주 예상)
- 연구비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http://www.kaia.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 고객센터
  - (KAIA) KAIA 접속 → 참여 → FAQ 및 Q&A
  - (IRIS) IRIS 접속 → 알림·고객 → R&D 신문고
- 인터넷 오류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 고객센터
  - (게시판) IRIS 접속 → 알림·고객 → R&D 신문고 / 고객센터 안내
  - (콜센터) 1877-2041(부가통화) / 042-862-1500(일반전화)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휴일 및 공휴일 제외

### 3.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가. 신청서류(관리지침 제12조제2항)

연번	항목	필수 여부	비고
1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문서24를 통해 전자공문으로 제출 권고) ※ 문서24 사용방법은 참고9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참고	필수	참고9
2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신청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 날인)	필수	서식1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필수	서식2
4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서식3
5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증빙서류 포함)	필수	서식4
6	RFP 자체검토 의견서	필수	서식5
7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전체연구기간 대상) ※ 3천만원 이하의 장비는 별첨 '연구시설 장비별 구축계획서'만 작성 * 3천만원~1억원 미만 : 전문기관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 대상 * 1억원 이상 : 과기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사평가단의 심의 대상	해당시	서식6
8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기관별)	필수	-
9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해당시	-
10	(중소기업)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해당시	서식7
11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 ※ 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a href="https://sminfo.mss.go.kr/">https://sminfo.mss.go.kr/</a> ) * 중견기업 확인서: 중견기업정보마당( <a href="https://www.mme.or.kr/">https://www.mme.or.kr/</a> )	해당시	-
12	표준재무제표 증명(최근 2년) ※ 정부24( <a href="http://www.gov.kr">www.gov.kr</a> )에서 온라인 발급받아 제출	해당시	-
13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영리기관만 해당, 공기업·출연연 제외) ※ 정부24( <a href="http://www.gov.kr">www.gov.kr</a> )에서 온라인 발급받아 제출	해당시	-
14	신용평가조회 결과서 사본(영리기관만 해당, 공기업·출연연 제외) * 설립 3년 미만 기업은 미제출	해당시	-
15	해외기관의 사업참여의향 확인서(Letter of Intent), 사업양해각서(MOU) 또는 구매의향서 등	필수	참고8 (수정가능)
16	청렴서약서(신청기관/ 주관연구개발책임자)	필수	서식8

## 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절차



## 다. 신청서류 접수

- 신청공문은 가능한 전자공문<sup>\*</sup>으로 접수하며, 마감시간('26.02.09(월) 18:00) 이내 제출 필수
  - \* (전자공문 사용방법) [참고9] 문서24(<https://docu.gdoc.go.kr/index.do>)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참고
- 신청서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ID로 접속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입력 및 업로드(제출 마감시한 내 기관담당자 승인까지 완료)
  - 정보별 입력 및 저장 후 [최종확인]→ [제출]→ [기관담당자 승인]
    - ※ 연구책임자 제출 마감 이후 신규 접수는 절대 불가하며, 연구책임자 제출 완료된 과제라도 기관담당자 승인 마감이 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처리 불가
  - 온라인 접수를 위해 “[참고6] IRIS 전산접수 매뉴얼” 확인 및 ‘IRIS 연구개발 과제 접수전 필수 이행사항’ 필독 후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사전에 준비 필요

## 라. 신청서류 작성요령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자료 양식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http://www.kaia.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전산접수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에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부합되도록 작성하고 제시된 보안등급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
- 연구개발계획서는 [서식1]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식 <본문1><sup>\*</sup>은 100쪽 이내로 작성 필수(초과되는 분량(101쪽 이후)은 선정평가 자료에서 제외)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사업화 성과의 확대전략 및 계획”,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7. 성과점검기준표는 쪽수에 미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자료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 조치

## 마. 신청서류 검토 및 처리(관리지침 제12조 제4항 · 제5항 참고)

-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반려
  - 신청공문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관리지침 별표1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 반려
  - 연구개발계획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단,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혁신법 시행령 별표1)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최종 과제제안요구서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기획자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관리지침 별표1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그 밖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 4. 기타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혁신법 관련 행정규칙\*, 운영규정, 관리지침 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http://www.kaia.re.kr))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 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상기 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 **III. 선정평가**

# 1. 선정평가 절차

절차	방법 및 내용	일정
시행 공고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문기관(진흥원)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 공고 및 접수</li><li>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li></ul>	'26.01.07 ~ '26.02.09 18:00
신청서류 검토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문기관(진흥원) : 신청서류 검토*(필요시 보완 요청) * 참여제한 해당 여부, 신청자격 적합 여부, 제출필요 서류 누락 등</li><li>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청서류 보완(전문기관 요청시)</li></ul>	'26.02
사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문기관(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의 RFP와의 부합성,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등 선정평가 사전검토</li></ul>	'26.03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선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차 평가(필요시) : 사업공모 및 RFP와의 부합성, 기수행과제 와의 차별성,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추진전략 및 방법의 구체성 등에 대한 서류평가(100점 만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차 평가점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2차 평가대상 선정</li></ul></li><li>2차 평가 :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추진전략 및 방법의 구체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발표평가(100점 만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종합평가점수(2차 평가점수에 가·감점 반영)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과제 선정</li></ul></li></ul> <p>※ <u>(유의사항) 발표자료는 신청서류 접수시 제출한 연구개발 계획서를 사용하여 발표(PPT 등 별도자료 사용 불가)</u></p>	'26.03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국토부 보고 및 확정</li><li>주관연구개발기관에 선정평가 결과 통보</li><li>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전문기관간 협약체결</li></ul>	'26.04

※ 신청서류 접수 이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2. 평가항목 및 배점

- (1차 평가) 연구개발계획 서면평가(100점 만점, 필요시 실시)
  - (1단계 부합성·차별성 검토) 사업공고 및 RFP와의 부합성, 기수행과제와의 차별성\*에 대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검토를 통해 평가대상 여부 결정
    - \* 기존에 정부의 국내외 실증·사업화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기수행과제에서 개량, 현지화, 실용화 등의 계획을 제시해야 함
  - ※ 부합하지 않거나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시(참석 평가위원의 과반 이상)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2차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부합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li></ul>
차별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기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li></ul>

- ※ 1차 평가를 미실시 할 경우 1단계 부합성·차별성 검토는 2차 평가에서 실시
- (2단계 연구개발계획 평가) 평가항목에 대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를 통해 1차 평가점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기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종 연구개발목표/성과목표의 명확성, 타당성 및 창의성</li></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단계별·연차별 연구개발목표/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절성 및 구체성</li></ul>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신 기술동향 및 대상국 현장여건 분석의 충실성</li></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개발내용 구성의 타당성 및 연계성, 실현가능성(현지 협력여건)</li></ul>	
추진전략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내용·성과의 적절성</li></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지원금이 있는 경우 납부이행 관련 납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li></ul>	
활용방안 및 실용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실증·사업화 계획 등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및 타당성</li></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해외기관의 신뢰성 및 사업화 의지(필요시 매칭 여부 등)</li></ul>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관련분야 연구경험) 및 관리능력(경영상태 등)</li></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윤리 수준</li></ul>	
계		100

※ 선정평가시 기준항목(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2차 평가) 연구개발계획 발표평가(100점 만점)

- (발표평가) 평가항목에 대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에 따라 2차 평가점수 산출(1차 평가점수는 2차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기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목표 (20점)	• 최종 연구개발목표/성과목표의 명확성, 타당성 및 창의성	10
	• 단계별·연차별 연구개발목표/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연구개발내용 (20점)	• 최신 기술동향 및 대상국 현장여건 분석의 충실성	5
	•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내용·성과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현지 협력여건)	5
	• 연구개발내용 구성의 타당성 및 연계성	5
	•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지원금이 있는 경우 납부이행 관련 납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5
추진전략 및 계획 (30점)	• 실증·사업화 계획 등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및 타당성	10
	• 연구수행체계 구성의 타당성(적정기관수, 산학연 구성 등) 및 연구자의 전문성	10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 신규 인력 채용 의지, 연구개발기관의 직접 실증 수행 능력	10
활용방안 및 실용화 가능성(20점)	• 연구개발성과 활용시나리오의 적절성 및 구체성	5
	• 연구개발성과의 해외 사업화 가능성	5
	• 개발기술의 기대성과(기술적/경제적/정책적) 및 파급효과	5
	• 해외기관의 신뢰성 및 사업화 의지(필요시 매칭 여부 등)	5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10점)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연구역량(관련분야 연구경험 및 관리능력/국제공동연구 수행역량 등)	5
	• 연구윤리 수준	5
계		100

※ 선정평가시 기준항목(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최종 선정) 2차 평가점수에 가·감점을 반영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종합평가점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과제 선정

### 3. 평가점수 산정방법

- (산정방식)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산정(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탈락사항)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단독신청일 경우도 '탈락' 조치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차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고 가점 포함시 60점 이상일 경우 '탈락', 2차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감점 포함시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조치
  - '부합성 검토' 결과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 '차별성 검토' 결과 기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 평가 당일 특별한 사유없이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은 경우 '탈락' 조치
  - ※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표가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해당시 진흥원과 사전에 별도 협의 요망)
- (가·감점 반영) 관리지침 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 및 운영규정 별표2를 준용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차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을 부여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가점 및 감점은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증빙)와 이에 대해 진흥원에서 요청한 보완사항을 보완한 자료를 근거로 2차 평가점수에 합산하되,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에는 부여하지 않음
  - 신청기관은 가점 및 감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4]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에 따라 해당 목록과 증빙서류 제출
  - 가점 및 감점의 적용기준일은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과제 선정) 종합평가점수(2차 평가점수에 가·감점 반영)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과제 10개 내외 선정

## < 가점 및 감점 기준 >

구분	내 용
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b>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가점</b></li> </ul>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 이내(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른 신청 마감일을 기준)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을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b>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b></li> </ul>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b>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b></li> </ul>
기술실시실적에 따른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한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b>선정평가 점수의 1% 가점</b></li> <li>○ 제출한 기술실적 증빙 자료 내에 지원부처명(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명 등이 확인되어야만 실적 인정 가능</li> </ul>
연구성과 포상에 따른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우수 연구개발 성과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적절한 포상(정부포상 훈격에 따른 훈장, 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과기부 장관상)을 받은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b>선정평가 점수의 1% 가점</b></li> </ul>
신기술 또는 녹색인증에 따른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중 1개 이상을 신규로 받은 중소 · 중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b>선정 평가점수의 1% 가점</b>(보호기간(지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li> <li>○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녹색인증 및 확인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자 및 연구 개발기관이 관련 녹색기술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b>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b>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li> </ul>
신진연구자에 대한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마감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b>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b> 부여</li> </ul>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자나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b>선정평가점수의 4% 감점</b></li> </ul>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에 따른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제재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b>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b></li> </ul>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납부기간 미준수에 따른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법 제32조제1항(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또는 같은조 제3항(제재처분에 대한 기지급 연구비의 환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간까지 미납한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2% 감점 부여</li> </ul>

## IV.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 1. 연구개발비 지원 · 부담 기준

-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기준(혁신법 시행령 별표 1)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 >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지원기준
가.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라.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 3.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 나. 연구시설 · 장비비
- 다. 기술도입비 · 연구재료비
- 라. 소프트웨어 활용비

##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비고>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음. 다만, 사회 ·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2. 제2호에서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을 말한다.

##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 연구개발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소요액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 각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 3. 항목별 세부 계상기준

- 연구개발비 항목별 세부 계상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혁신법 시행령 별표2) 및 [참고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 □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항목	사용용도
다. 연구시설 · 장비비	<p>1) 연구시설 · 장비 구입 · 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 시설 · 장비의 구입 · 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p> <p>2) 연구시설 · 장비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 · 장비의 임차비</p> <p>3) 연구시설 · 장비 운영 · 유지비 : 유지 · 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p> <p>4) 연구인프라 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 · 시설의 매입 · 임차 · 조성비, 설계 · 건축 · 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 · 설비비</p>
라. 연구재료비	<p>1)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 · 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p> <p>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p> <p>3)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 · 시험설비 제작비용</p>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 · 단체(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 단체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부담비	<p>1)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p> <p>2)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p>
아. 연구활동비	<p>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 · 특허 · 표준 정보 조사 · 분석, 원천 · 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p> <p>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p> <p>3)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 세미나 개최 비용</p> <p>4)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p> <p>5)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 · 네트워크의 이용료</p> <p>6) 연구실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 비용</p> <p>7)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 · 훈련 비용, 학회 · 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p>

항목	사용용도
	<p>지출된 야근(특근) 식대</p> <p>8)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p> <p>9)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p> <p>10)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p> <p>11)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p>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 보안수당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p>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p> <p>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p> <p>3) 제1호 나목 2)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p> <p>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p>

항목	사용용도
	<p>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p> <p>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p> <p>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p> <p>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p> <p>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비용</p>
나. 연구지원비	<p>1)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p> <p>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p> <p>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p> <p>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p> <p>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p> <p>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p> <p>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p> <p>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p> <p>5)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p> <p>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p> <p>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차 관련 비용</p> <p>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p> <p>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p> <p>6)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p> <p>7)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p>
다. 성과활용 지원비	<p>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p> <p>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p> <p>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p> <p>다) 홍보전문가 양성</p> <p>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p> <p>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p> <p>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p> <p>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p> <p>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p>

항목	사용용도
	<p>라) 연구노트의 작성 ·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 · 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 · 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p> <p>3) 기술창업 출연 · 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p>

### < 비고 >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 · 학사학위과정 · 석사학위과정 · 학석사통합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 2-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 2-3. “박사후연구자”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 4. 청년인력 신규채용 세부사항

-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총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인력 신규채용
- (대상과제 및 기관) 연구개발과제 기준으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2개 이상의 영리기관이 참여할 경우 영리기관별 합계)이 5억원 이상인 과제, 채용주체는 영리기관(「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 ※ 연구개발과제에 2개 이상의 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영리기관간 협의를 통해 신규채용 주체 및 인원 결정
- (채용조건) 채용시점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과제 인건비계상을 100%, 1년 이상 고용 유지
  - ※ 군 복무기간만큼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여 추가인정 가능
- (채용시점) 최초 참여연차 회계년도 내에 일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단, 최초 참여 연차에 1명 이상 채용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적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차 종료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하여 채용 가능
    - ※ (예시) 총 연구개발기간이 3년인 과제에 3개 영리기관(A, B, C)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이 10억원인 경우(청년인력 의무채용 : 2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3억원)	3억원 (6억원)	4억원 (10억원)	10억원
의무채용 인원	1명	1명	-	2명
의무채용 영리기관	A기관	C기관	-	-

- (서류제출) 영리기관은 협약시 청년인력 신규채용 확인서(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한 인력도 이에 포함)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 요청시 청년인력 신규채용 확인서 보완본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청년 인력 신규채용 확인서 등)를 진흥원에 제출
- (위반시) 계획한 청년인력을 미채용하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 할 경우, 기지급된 인건비를 포함하여 해당 인력의 인건비 전액 불인정

## 5.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 (개요) 연구비 부당집행액에 대한 회수율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대상과제 및 기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모든 중소기업
  - 단,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이자 보상배수 1.0배 이상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은 면제  
※ 면제 기준 부합 여부는 협약시 별도 협의 요망
- (보험가입액)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각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보험가입액 세부사항은 협약시 별도 안내 예정
- (보험기간) 각 연차시작일~해당 단계종료일 + 9개월 가산  
※ 연구개발비 단계정산 및 기간을 고려하여 9개월 가산
- (보험료) 연구개발비(간접비)로 계상 가능
- (제출방법)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 내 모든 중소기업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취합하여 협약서류와 함께 진홍원에 제출(협약시 제출)

## 6. 기술료 납부

- (개요)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연구개발 성과활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  
※ 관련근거 : 혁신법 제18조,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
- (산정방법 및 납부기한)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금액 = 매출액 × 기술기여도 × 기술료율

납부대상	납부기준		납부상한 및 납부기간		
	기업유형	부과기준	기술료율	납부상한(한도)	납부기간
중소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과제협약)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의 10% 이하	수익발생 다음해부터 5년되는 날 또는 과제종료된 날부터 7년 도래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총 5회차, 매년 납부)
중견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과제협약)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의 40% 이하	

- 기술기여도는 ①수익(매출액)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이 활용된 제품의 비율(매출액 기여율)과 ②전체 연구개발활동 중 정부 R&D 비중 등을 고려하여 산정

$$\text{기술기여도} = \textcircled{1} \frac{\text{제품 예상매출액}^*}{\text{기업(제품군) 예상매출액}} \times \textcircled{2} \frac{\text{총정부지원연구개발비}^{**}}{\text{총사업비}^{***}}$$

\* 예상매출액 : 정부R&D 사업(총사업비)의 성과실시로 인한 예상매출액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분

\*\*\* 총 사업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Sigma$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기술기여도는 협약을 통해 비율을 정하고 납부액 산정시 과제 종료 후 정산 환수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과기부, '24.12))

## 7. 기타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혁신법 관련 행정규칙\*, 운영규정, 관리지침 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http://www.kaia.re.kr))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 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상기 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 V. 신청 관련 Q&A

[Q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유기술이 국토교통 R&D에서 개발한 기술이어야 하는지?

[A1] 민간기업이 보유한 국토교통 관련 분야 기술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 출연연구기관, 대학, 학·협회 등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Q2]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현재 개발중인 기술로도 참여가 가능한지?

[A2] 본 사업은 해외 현지 실증을 통한 사업화를 앞둔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성숙도(TRL) 기준 7~9단계(실증-실용화-상용화)의 기술을 권장하며, 기술 성숙도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Q3] 해외기관이 컨소시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해외기관의 역할과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A3] 해외기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함께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과 실증대상지 제공, 현지 사업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공고안내서 p.3 용어 정의 참조). 해외기관의 요건(해외기관의 타당성·신뢰성, 구체적 협력방안 등)은 선정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평가하며, 신청기관은 주관 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기관 간 체결한 사업참여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구매의향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4] 본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했던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하였는데 제출한 기술이 공고에 반영되거나 선정평가시 별도 가점이 있는지?

[A4] 사전 수요조사는 국토교통기술의 해외 진출 가능 기술 보유현황, 사업화 계획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접수된 기술이 공고에 반영되거나 선정평가시 별도 가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Q5] 현지 실증계획에 실증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아도 되는지?

[A5] 실증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실증대상 후보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실증계획에는 실증범위, 실증 후보지, 실증기술 내용, 추진전략, 실증 시나리오 및 실행방안, 추진일정, 리스크 관리, 실증 후 운영 관리, 해외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6]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와 관련하여 본 과제가 4책 6공에 해당하는지?

[A6] 본 공고 과제는 해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가 아니어서 4책 6공에 해당하지 않고 3책 5공을 적용합니다.

[Q7]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를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항목으로 편성 가능한지?

[A7] 본 공고 과제는 해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가 아니어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아닌 연구활동비나 위탁연구개발비에 해외기관의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Q8] 중소기업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A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타 서류 불인정).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한국중견기업협회(<https://www.mme.or.kr>)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타 서류 불인정)

[Q9]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영리기관의 상환의무가 있는가?

[A9] 영리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10]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A10]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 개발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은 관리지침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11]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학회 또는 협회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가?

[A11] 연구개발기관으로서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기관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자격은 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2]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받는 연구책임자의 범위는?

[A12]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만 해당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봅니다.

[Q13] 회계법인 위탁 정산 수수료는 어느 항목에 계상해야 됩니까?

[A13] 위탁 정산 수수료는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을 해야 하며, 연구 개발비 규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고> 2025년 위탁정산수수료>

※ 위탁 정산 수수료 = 표준수수료 + 가산금

(단위 : 천원)

연구개발비 규모 * 당해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합 (현물 및 이월연구비는 미포함)	표준수수료(부가세 포함) '25.1.1~'25.12.31. 기간 내 신규 협약체결 과제	비고
0.5억원 미만	540	* (가산금)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라 5~10% 비율의 가산금 추가 <국외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제외>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631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722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843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2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205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445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691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029	
100억원 이상	2,232	

공동연구 개발기관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의 5% (1개 기관 추가시마다)

[Q14] 가점 및 감점에서 예를 들어 최근 2년 이내의 경우 기준이 되는 일자는?

[A14] 가점 및 감점 적용 기준일은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6.02.09이] 신청 마감일인 경우 최근 2년 이내는 '24.02.10~'26.02.09(신청 마감일)까지가 해당됩니다.

[Q15] 가점 및 감점 기준이 적용되는,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A15] 신청인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됩니다.

[Q16] 신청서류 접수 이후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A16] 신청서류 접수 마감 이후에는 임의로 수정·보완을 하실 수 없으며, 접수시 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만 보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자의 보완요청사항 및 단순 오류의 정정사항 이외에 연구개발 계획서 등 신청서류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실 경우, 관리지침 제12조에 따라 거짓된 신청서류의 접수로 판단되어 신청서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17]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외에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에게 현금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17]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한국연구산업협회 발급)는 인건비의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기관이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VI. 과제제안요구서 (RFP)

#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 과제제안요구서(RFP)

연구개발과제명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2차 공모)
1. 연구개발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토교통 국내 우수기술의 수요국 맞춤형 개량·현지화, 해외 실증 및 사업화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국내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해외시장 진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단계) 국가 R&amp;D사업을 통해 개발되었거나 개별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대상으로 해외 적용 가능성을 조사·검토하고 현지 실증계획 수립</li><li>- (2~3단계)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실증을 통한 국내기술의 해외 적용실적(Track Record) 확보로 안정적인 사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달성</li></ul></li></ul>
2. 연구개발 필요성 및 기술 동향	<p><input type="checkbox"/> <b>연구개발 필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협력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국내기술의 상용화·현지 실증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의 전략 추진과제가 제시됨<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정과제函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li><li>국정과제函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 미래 모빌리티 실현'</li><li>「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2.12)」 과제2-5-② 국내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혁신주체의 국내 유치 확대(ICT 및 유망기술 분야(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등))</li></ul></li><li>○ 해외 현지 맞춤형 국토교통 기술개발, 현지 실증·사업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우수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마중물 역할 필요<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초기에는 현지 법·제도, 시장 여건 등 전문지식을 보유한 해외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기술을 현지 조건에 맞게 개량(현지화)함으로써 사업화 및 해외수출 달성 가능</li><li>- 해외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본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기업이 해외진출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현지 테스트베드 부족, 해외시장 정보 부족 등) 해소 가능</li></ul></li></ul> <p><input type="checkbox"/> <b>국내외 정책·기술 동향</b></p> <p><b>[국내 정책 동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보유기술의 업그레이드와 성능 검증을 지원하는 글로벌수요연계형 사업(전 분야)과 현지맞춤형 기술개발·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시장개척형 사업(에너지 분야)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추진중(3년 이내, 과제당 5억원 내외)</li></ul>

-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 협력국의 원천 혁신기술과 국내 중소기업의 ICT·생산기술을 결합하여 후속 상용화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해외 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사업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추진중(2년 이내, 과제당 4억원 이내)
-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수출용 기술개발(업그레이드 포함), 비즈니스모델 개발, 해외 규격인증 획득 등을 지원하는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 지원사업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추진중(21개월 이내, 과제당 10억원 이내)

### [국외 정책 동향]<sup>1)</sup>

- (미국)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프로그램(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을 상시 제안받는 자유공모 (bottom-up) 방식으로 추진중
- (영국) 영국 혁신청(Innovate UK)은 중소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하여 정부가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연구기관이 해결책을 제안하는 지정공모 (Top-down) 방식의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사업(Small Business Research Initiative, SBRI)을 운영중
- (일본) 일본 국토교통성은 건설 분야 기술혁신을 위해 건설기술의 고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받아 선정하여 진행하는 지정공모(Top-down) 방식의 건설기술연구개발조성제도를 운영중(중소기업 전용 트랙 보유)

### [국내·외 기술·시장 동향]

- (기술 동향)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토교통 분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100%) 대비 85.0% 수준이며 평균 3.1년의 기술격차를 보임
  - 분야별로는 도시공간(85%, 3.0년), 도로교통(85%, 3.0년), 물류(85%, 2.0년), 철도교통(90%, 3.0년) 등이 기술경쟁력이 높게 나타남
- (산업 동향) 2021년 기준 세계 건설기계 산업에서 미국, 중국, 일본 3개국의 비중은 1,214억 달러(약 1,700조 원)로 전년 대비 15.2% 증가, 세계시장 전체의 약 65.8%에 달하여 특정국가 편중 현상이 나타남
- (수주 동향) 최근 10년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 가까이 감소하였는데, 가격경쟁력은 중국·인도에, 기술경쟁력은 미국·유럽 등에 밀리며 국내 기업의 수주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

\* '15년 461억→ '24년 371억 달러(해외건설협회, 2024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분석)

→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촉진을 위하여 현지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적용실적 확보를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개척이 절실히 요구

### 3. 연구개발내용

- (개요) 본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기관(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보유기술의 현지화·실증·사업화 계획을 제안하여 신청하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
- (대상기술) ①연구개발기간 내 해외 사업화(매출 발생, 조달계약체결 등) 달성이 가능한 ②주관기관(기업) 보유 ③기술성숙도(TRL) 7 이상의 ④국토교통 분야 기술
- (추진목적) 해외시장 수요 반영 및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적용을 목적으로, 해외기관·기업 등과 공동으로 공법 개발, 시제품 제작, 현지 테스트 베드 운영 및 사업화, 국제인증 획득 등 Track Record 확보 추진
  - (세부내용) 과제당 총 연구개발과정을 1~3단계로 구분(타당성 조사 → 공동 연구·실증 → 사업화)하고 관문형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 \* 관문형 평가(Stage-Gate Process) : 각 단계(stage) 사이에 관문이 존재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 가기 전에 현 단계의 활동을 평가하고 프로젝트의 계속·중단, 우선순위 변경, 자원 재배분 여부 등을 결정하는 R&D 평가·관리체계
- (1단계 주요 연구내용) 국내 기술의 현지 적용, 실증, 시장진출, 사업화 등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 적용 타당성 조사 실시
  - 현지 동향 및 현장여건 분석 : 정책 및 협력여건, 기존 정책·사업과의 연계성, 현지 기술 수준, 법·제도 시장 동향, 기술 인증 절차 분석, 수요국 관심사항 등
  - 기술개발 및 현지화 계획 : 기술의 정의·목적, 기술확보 배경, 특장점 및 차별성, 기술개발 혹은 개량 등 현지화 방안, 소요예산 등
  - 현지 실증계획 : 실증 대상지 개요,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협업체계, 실증 시나리오 및 리스크 대응방안, 일정계획, 소요예산, 실증후 운영관리방안 등
- \* 리스크 예시 : 안전사고, 실증대상지 미확보, 현지 허가·협의 지연, 실증결과 검증 불가 등
- 해외시장 진출 및 사업화 계획 : 해외기관의 사업화 의지 및 구매의향, 수요처 및 재원 확보방안, 사업화 및 리스크 대응방안, 흥보계획, 소요예산 등
- \* 리스크 예시 : 기술유출, 수요처 미확보, 현지 협의 지연, 사업화 매출 미달성 등
- 사업성과목표 및 파급효과 : 사업성과목표(정량·정성), 경제적·기술적·정책적 타당성 검토, 투입예산 대비 예상수익, 기대효과 등
- \* 과제·기술의 특성에 따라 실증·사업화·정책·제도·인증 등 검토

#### < 단계별 주요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비 >

구분	주요내용	지원비율 및 규모
1단계 (1차년도)	현지 환경조사, 공동연구 및 실증계획 수립, 시장진출 타당성 검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과제 수 : 10개 내외</li> <li>- 지원금액 : 과제당 1.4억 원 내외</li> <li>- 과제기간 : 9개월 이내</li> <li>- 총지원규모 : 14억 원</li> </ul>
2단계 (2~3차년도)	현지 맞춤형 기술 공동개발 및 개발기술의 현지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과제 수 : 6개 내외</li> <li>- 지원금액 : 과제당 15억 원 내외</li> <li>- 과제기간 : 2년 이내</li> <li>- 총지원규모 : 90억 원</li> </ul>
3단계 (4차년도)	현지 기술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과제 수 : 5개 내외</li> <li>- 지원금액 : 과제당 3억 원 내외</li> <li>- 과제기간 : 1년 이내</li> <li>- 총지원규모 : 15억 원</li> </ul>

#### 4. 연구개발 추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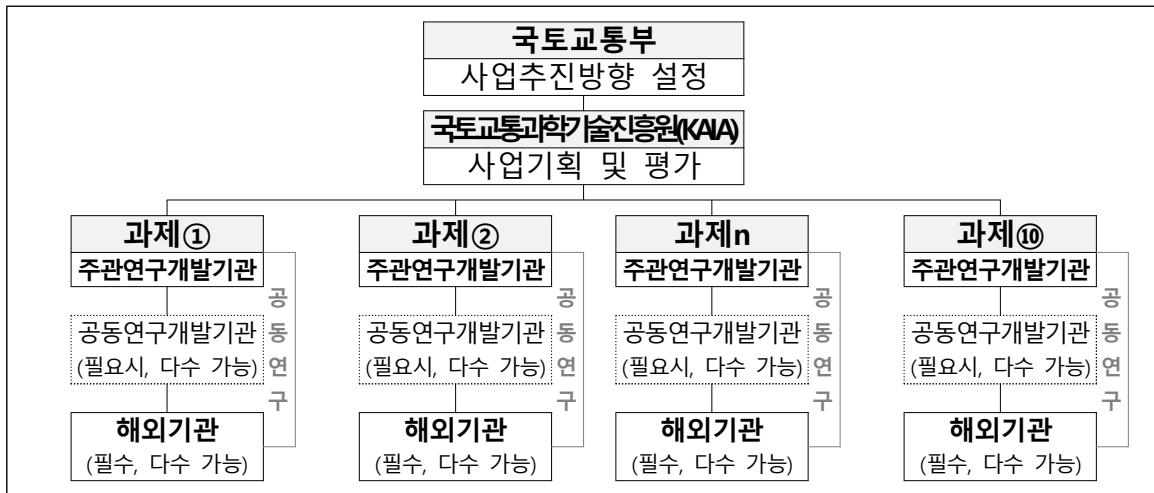
추진절차(안)

구분	수행주체	주요내용	추진시기
사업 공고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계획 공고 (홈페이지, 30일 이상)</li> </ul>	'26.1~
신청서류 제출·검토	신청기관 →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 온라인 접수 (보완서류 포함)</li> </ul>	'26.1~'26.2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10개 내외 과제 선정)</li> </ul>	'26.3~'26.4
1단계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에 선정평가 결과 통보 및 협약서류 제출</li> </ul>	'26.4
1단계 타당성조사 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환경조사 및 시장진출 타당성 등 검토</li> </ul>	'26.4~12
타당성조사 단계평가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현지 적용 타당성 평가 (10개 내외 중 6개 내외 선정)</li> </ul>	'26.11~12
2단계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에 평가결과 통보 및 2단계 협약서류 제출</li> </ul>	'26.12~'27.1
2단계 공동연구 및 실증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공동개발(개량) 및 현지 실증</li> </ul>	'27.1~'28.12
공동연구 및 실증 단계평가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평가 (6개 내외 중 5개 내외 선정)</li> </ul>	'28.11~12
3단계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에 평가결과 통보 및 3단계 협약서류 제출</li> </ul>	'28.12~'29.1
3단계 사업화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기술사업화</li> </ul>	'29.1~'29.12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최종평가</li> </ul>	'29.12~'30.5

\* 추진일정은 심의 등 행정 처리기간 소요에 따라 변동 가능

## □ 추진체계

< 성과혁신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일반형 국제공동연구) >



- 본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편성하되 개발기술의 실증주체·수요처 중심의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구성 가능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 기술간 연계·활용, 최종 연구개발성과물의 실용화 등을 고려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연구개발과제의 총괄 역할을 수행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과제 시작 시점(1단계)부터 종료(3단계)까지 동일기관이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 주관연구책임자는 역할 분담의 필요성 및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연구개발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진행·관리
    - 컨소시엄 구성시 과다한 연구개발기관의 참여 및 연구개발계획 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할 것
- ※ 컨소시엄은 합리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내용 및 역할이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시 조정될 수 있음
- 해외기관은 협력기관, 실증지원기관, 수요기관 중 하나로 참여가 가능하며, 이중 해외협력기관만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기관유형 구분	설명(협력 예시)
해외협력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 (현지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을 현지화하고 사전 실험, 인·검증, 기술 개선사항 도출 등 협력)
해외실증지원기관 (정부예산 지원 불가)	부지 제공, 승인 등 현지 실증과정을 지원하는 해외기관 (현지 정부·지자체 등의 지원으로 실증 대상지를 제공받고 실증시 필요한 사전 허가 취득, 실증 후 기술도입(구매) 협의 등 협력)
해외수요기관 (정부예산 지원 불가)	기술을 도입할 해외 발주처 혹은 원도급사 (현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실증 후 기술도입(구매) 협의 등 협력)

- 해외 연구기관과 사전협의 후 공동연구 내용을 반영하여 참여의향서(LOI)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특히 성과물 등 배분에 대한 사전 논의·검토 필수\*

\* 선정된 과제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계약서'와 '국내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제2장 제3절 연구개발기관 간의 국제계약서 작성,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부록3. 국제계약서 주요 조항해설 및 샘플(예시) 등 참조 (과기부, 2024.3)

- 국제협력 특성이 미흡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상대국 연구기관의 단순 용역 수행(시험 테스트 등), 국내에서 동일 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등
- 관련 기술 및 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활용하여 연구개발의 기술·정책적 보완사항 확인 및 반영
- 관계부처·기관, 학계·업계, 해외 연구기관 간 유기적 협의체계 구축을 통한 의견수렴 및 교류 활성화 추진
- 연구자의 연구 참여율을 높여 연구 집중도 제고 필요
- 해외 연구기관, 기술공급자, 수요처 등과 긴밀한 협력을 위한 일정과 계획을 제시하고, 수요 지향적 기술개발 및 수행체계 구축(지속적인 기술 동향 조사 및 수요조사 등)

#### □ 추진방식 : 단계별 지원과제 관문형 평가 후 선정

- 1단계 타당성 조사를 지원할 10개 내외 과제 선정
- 타당성 조사 수행 후 단계평가를 거쳐 해외에서 공동연구가 기술적·경제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2단계 후보 6개 내외 과제 선정
- 적용성 연구(총 2년) 수행 후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5개 내외 과제 선정
- 5개 과제에 대해 기술사업화 연구(총 1년) 지원

#### □ 성과목표·지표 설정 : 전체 연구개발기간(1~3단계) 적용

- 연구개발 성과목표(성과지표/달성목표치/가중치)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일정) 관리계획 수립
  - 국내 기술의 해외 확산을 위한 핵심기술 정의 및 구현 시나리오 제시
  - 성과물의 목표 수준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
  - 국내 연구성과 확산의 목표와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안 제시
  - 연구과제를 통해 예상되는 성과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별로(해외기관 포함) 제시
  - 질적성과지표 작성시 양적성과지표 목표와 연구의 질적성과를 계량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제시해야 함(예시 : 정확도 95%)

※ 연구개발과제선정 후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신청자는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최종성과(핵심성과물)를 유형별(사양, 장비/장치, 소프트웨어, 시스템, 정책제도 등)로 나열하고, 세부 설명 제시
-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성과지표를 반영하고 그 외 과제특성을 고려한 고유 성과지표도 제안할 수 있음
 

※ 첨부의 기획보고서 내 전략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성과지표 설정이 가능하고, **공통지표로 연구개발성과 현장시험 및 검증, 사업화·제품화, 국제 협업프로그램 각 1건 이상을 필수로 포함**
- 성과지표별 목표는 도전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목표치 설정근거 제시
 

※ 성과지표 목표치 및 설정근거가 미흡할 경우 협약시 조정
- 제시한 성과지표에 사업의 공통성과지표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검토, 선정평가 이후 협약시 조정(추가) 가능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단계평가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

< 성과지표 예시 >

구분	단위/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IRIS 성과등록시 성과항목
1	특허등급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허등급지수 BBB이상 특허등록(건)</li> <li>* 한국발명진흥회 SMART 평가 'BBB' 등급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재산권(특허)</li> </ul>
2 (필수지표)	연구개발성과 현장검증(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시험 및 검증(건)</li> <li>* 연구개발성과 검증을 위해 현장에 시범적용, 시험시공 등을 한 성과</li> </ul>	-
3 (필수지표)	기술사업화 효과(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화/제품화(건)</li> <li>* 연구개발성과를 실제 계약한 실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화현황</li> <li>매출실적</li> </ul>
4 (우선 고려)	인증(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 및 제품인증(건)</li> <li>* 형식승인, SIL, ISO, NET 등 인증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기술지정</li> <li>기술및제품인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화(국내·국제)(건)</li> <li>* KS, KRS, IEC, IRIS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화(국내표준)</li> <li>표준화(국제표준)</li> </ul>
5 (우선 고려)	현지 정책활용도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제도 제개정(건)</li> <li>정책채택(건)</li> <li>설계기준·시방서 제·개정(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반영</li> <li>정책활용</li> <li>설계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등)</li> </ul>
6	기술실시계약(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실시(이전)(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실시(이전)</li> </ul>
7	학술지게재 논문(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CI(E) 학술지 게재(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논문</li> </ul>
8	참여기업의 청년인력 신규 채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인력 채용 인원(명)</li> <li>* 채용시점 기준으로 만 15세이상 34세 이하(군 복무기간 고려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율 100%, 최소 1년 이상 고용 유지</li> <li>* 목표산출근거 : 총 연구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5억 원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인력 신규로 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창출</li> </ul>
9 (필수지표)	국제공동연구 협업프로그램(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국 연구자 협업 및 네트워크 증진 프로그램 운영(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자 교류, 기술 시연회 개최 등</li> </ul>

○ 핵심 연구개발성과의 연차별 목표 및 수준 등 제시

- 핵심 연구개발성과 제시 및 그에 따른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적합한 연차별 세부 추진전략 및 일정계획, 핵심성과 로드맵 제시

※ 제시한 성과지표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시 조정(추가) 될 수 있음

- 단계별·연차별 달성목표(마일스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검증할 수 있도록 적합한 성과평가 방법을 명시할 것

- 연구개발목표는 정량적으로 제시

※ 예) 기존 대비 00% 비용절감, 00% 수준의 성능 향상, 00까지 00% 보급 등으로 제시하되, 필수지표인 연구개발성과 현장검증(건) 및 사업화 매출(건 및 백만원) 필수 포함

○ 성과로드맵 및 단계별/연차별 성과 평가지표(안) 제시

※ 단계별/연차별 성과 평가 지표(안)는 향후 단계평가시 참고 예정

## 5. 최종 연구개발성과물

### □ 1단계 기술타당성 조사

○ 현지 환경조사, 시장진출 타당성 분석 및 결과보고서

< 1단계 타당성조사 보고서 목차(안) >

구분	주요 내용
1. 개요	- 배경 및 목적, 조사 범위(공간·시간·기술),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2. 현지 수요 예측 및 여건 분석	- 타겟 시장 분석, 현지 법·제도 분석, 기술 실증 및 사업화 가능성 분석 등
3. 기술개발 및 현지 실증 계획	- 기술개발 계획 및 현지 실증계획 수립 등
4. 해외 시장진출 및 사업화 계획	- 현지 시장 분석, 위험요인 분석, 사업화 준비 등
5. 공동연구 추진체계	- 추진체계 R&R, 사업관리 거버넌스 등
6. 리스크 분석	- 위험 식별 및 위험도 평가, 위험요인 대응 및 반영 계획 등
7. 사업 타당성 분석	-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
8. 결론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등

### □ 2단계 기술 공동개발 및 현지 실증

○ 성과목표 달성을, 현지 실증 결과 및 기술개선 보고서

○ 전문가 현장평가 결과, 해외 수요처 만족도 등

< 2단계 성과지표 예시 >

성과지표	목표	산출기준
① 목표 및 수행관리 불이행률	5% 미만	- 제출된 사업계획의 추진일정 기준 $\sum(\text{지연 건수}) / \sum(\text{목표 및 수행관리 항목 건수})$
② 사업비 관리 집행률	90%	- 사업계획상의 주요 집행 품목에 대한 집행 $\sum(\text{집행금액}) / \sum(\text{총 예산})$
③ 협의 달성 여부	Y	- 발주처와의 협의 및 현지와의 협업활동 달성 여부
④ 성과확산 실행 여부	Y	- 사업화 달성 및 후속 사업 발굴·연계 여부

## □ 3단계 기술사업화

### ○ 사업화 성과평가 보고서

- 사업성과 내역(매출내역 및 기술료 납부현황)

- 사업화 매출기여 분석

\*  $\Sigma$  (사업화 매출액×R&D 기여율): 기술난제 해결형의 경우 최종 성과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 기술가치평가 분석

- 시장경쟁력 평가

- 일자리창출 성과내역(정부 지원금 10억 원 당 순고용인원)

- 파급효과 분석(인접국가로의 파급 가능성 등)

## 6.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 활용방안

○ 국내 기술 분야에서 구축한 성과를 해외 환경에 맞게 실증 사업 추진

○ 산·학·연 및 해외 기업과의 협업관계 구축을 통한 해외 수요 맞춤형 기술 제공

○ 해외 실증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후 국내 기업이 현지 시장에 진출하여 국토 교통기술 사업화 달성을 국내 연구 성과확산에 기여

○ 상대 국가가 겪고 있는 기술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연구 성과를 전수하거나 국제협력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국내외 기술력 제고

## □ 기대효과

○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공동연구,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국내 국토교통 기술의 해외 적용실적(Track Record) 확보

- 국내 우수기술의 해외 현지화·실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성공적인 실증 이후 현지에서의 사업화로 시장 확대 및 판로 개척

- 해외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화 기반 마련 등을 통한 국내 연구성과 확산, 신규 일자리 창출, 글로벌 기업 육성에 기여

○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예산지원 및 해외시장 수요조사와 기술현지화, 사업화 모델 지원을 통해 실질적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시장 활성화와 해외 수주 향상에 기여

## 7.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기간 : 2026.04 ~ 2029.12 (3년 9개월, 45개월 이내)

1단계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6.04.~2026.12. (9개월)

2단계

- 2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7.01.~2027.12. (12개월)

- 3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8.01.~2028.12. (12개월)

3단계

- 4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9.01.~2029.12. (12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11,900백만원 이내(과제당 1,940백만원 이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1,900백만원 이내 (과제당 1,940백만원)	1,400백만원 이내 (과제당 140백만원)

1단계

- 1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과제당 140백만원 이내

2단계

- 2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과제당 600백만원 이내

- 3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과제당 900백만원 이내

3단계

- 4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과제당 300백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영리기관 참여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차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르되, 추가 부담 가능

※ 연구비에 대한 구체적 산정내역을 제시해야 하며, 예산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축소 조정 가능

## 8. 기타 사항

본 과제의 보안등급은 "일반 과제"임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하되, 연구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연구개발내용을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 중인 유사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내용이 중복 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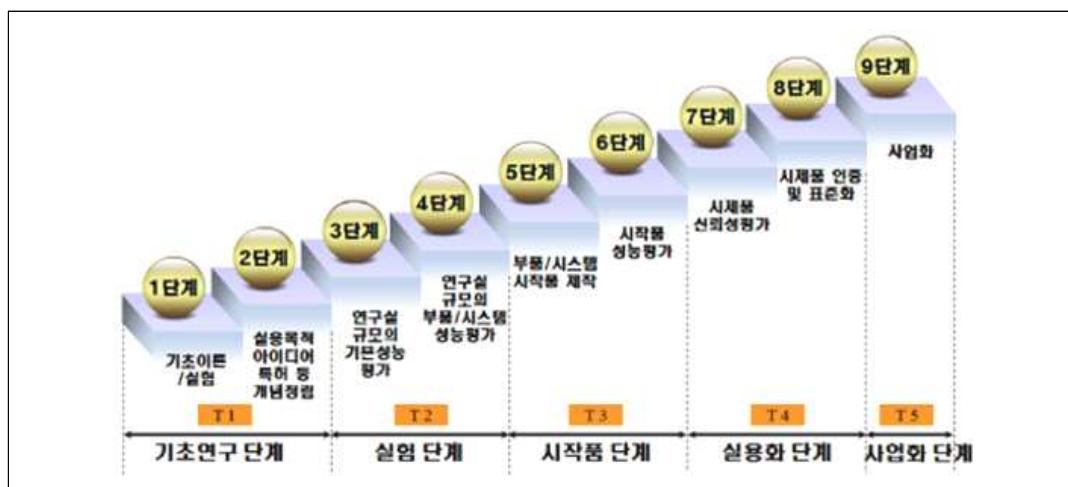
※ [www.kaia.re.kr](http://www.kaia.re.kr), <http://www.ntis.go.kr>의 유사과제 목록 참조

- 공모과제와 관련하여 기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과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개발계획에 포함

- 제안된 연구개발내용이 타 유사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 착수시점 현황과 개발종료 후의 대비가 가능하도록 핵심연구개발성과별로 As-Is와 To-Be를 구체화·가시화하여 제시
  - 연구개발계획서에 해외국가의 구성기술 간 연구개발내용 및 성과의 연계/활용을 위한 전략 제시
    - 개발기술과 성과물간의 유기적 연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 제시
  - ※ (예시) 해외국가 연구개발내용을 고려한 개발기술 상호간, 연구개발성과물 상호간, 개발기술 -연구개발성과물간 연계성
    - 과학기술적 성과물을 포함하여 최종 연구개발성과물을 구체화하여 제시
- 연구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성과지표/달성목표치/가중치) 및 연구개발 일정과 이에 대한 관리계획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개발된 기술 및 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제시한 성과지표는 사전검토,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추가) 가능
- 추후 연구개발계획 등은 수정·보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내 특정 기술개발에 대한 추진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은 추후 협약시 변경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필요시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과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보완(연구목표,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화·명확화)할 수 있음
  - 연구추진과정에서 관련 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내용(연구비 포함)이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기술성숙도(TRL)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연구개발성과물에 명시된 단계를 목표로 진행하고, 이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

< 국토교통 R&D 유형별 기술성숙도(TRL) 예시 >



1)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1.12) 건설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1-02호. pp.76-96.

**별첨****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구분	항목	비고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필수
서식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필수
서식3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서식4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증빙서류 포함)	필수
서식5	RFP 자체검토 의견서	필수
서식6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해당시
서식7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중소기업)	해당시
서식8	청렴서약서(신청기관/ 주관연구개발책임자)	필수
서식9	청년인력 신규채용 확인서	해당시
참고1	연구개발과제명 작성 안내	연구개발과제명 작성시 참고
참고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구개발계획서(표지) 작성시 참고
참고3	국토교통 R&D 유형별 기술성숙도	연구개발단계(TRL) 설정시 참고
참고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연구개발비 계상시 참고
참고5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연구진 구성시 참고
참고6	IRIS 전산접수 매뉴얼	신청과제 인터넷 입력시 참고
참고7	2단계 대형실험센터 안내	-
참고8	해외기관 참여의향 확인서(Letter of Intent) 샘플서식	해외기관 참여의향 확인서 작성시 참고
참고9	문서24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개인/대표/부서/업무)	전자공문 제출을 위한 문서24 사용시 참고
참고10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2024.03)	연구개발계획서 등 작성시 참고
참고11	국제공동연구 영문계약서 매뉴얼(2025.10.30)	해외기관과 계약서 작성시 참고 (2단계 1차년도 내 제출 필요)